

군포도시공사 제8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보수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김 상



2022년 11월 30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99 호

군포도시공사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(징계처분기간의 보수) 제2호 중 “강등, 정직처분”을 “강등처분”으로, “그 기간 중”을 “3개월간”으로 하고, 같은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지 원 부
입 안	직 위 성 명	경 영 지 원 부 장 강 승 구
	직 위 성 명	인 사 총 무 팀 장 이 태 권
자	담당자 성명 (전 화)	심 영 주 (3 9 0 - 7 6 4 3)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7조(징계처분기간의 보수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강등,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</u> <u>중</u>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 지급한다.</p> <p>3. (신설)</p>	<p>제17조(징계처분기간의 보수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강등처분을 받은 자는 3개월간</u>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 지급한다.</p> <p>3. <u>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동</u> <u>안</u>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</p>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

- 제27조(제도개선의 권고)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,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·점검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.

참고사항

-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의안번호 제2022-453호
「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의 실효성 강화」(2022. 5. 30.)

IV. 개선방안

1 정직기간 중 임금 지급 금지

- ‘정직’ 처분을 받고 직무에서 배제된 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은 징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,
 - 공직자에 대한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 요구에도 상충
- 「공무원 보수규정」을 준용하여 정직기간 중 출근 금지 및 직무 배제와 임금 지급 금지를 명문화하는 규정 마련
 - ⇒ 공기업·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에 반영
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·출연기관 관련 지침에 반영(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, 지방공기업 인사조직운영기준, 지방출자·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 기준, 지방출자·출연기관 인사·조직지침 등)
공직유관단체별 내부규정에 반영